

군포도시공사 제9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0년 10월 15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8호

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을 삭제하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공사 규정에 정한 경우”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 “『근로기준법』”을 “공사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이 태 권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공사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업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 <u>근로기준법</u> 」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하여는 <u>공사</u>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업무직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당 직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 관련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제40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 <u>근로기준법</u> 」을 준용한다.	제40조(준용) ----- ----- <u>공사 규정</u> 을 준용한다.